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건본주택 운영 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에 따른 잔여세대를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년 6월 29일 준공 완료된 아파트로서 계약 취소된 주택을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등에 대해 변경, 추가,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청약 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함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후 당첨된 동호수의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시까지 분양대금과 발코니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고 최초 모집공고일에 적용되었던 대출이자 대납(무이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되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7.31.)를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7.26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31.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청약신청 불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취소후 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08.18.)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

- 구입처 :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구입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전매 포함)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7월 31일(월)	8월 1일(화)	8월 4일(금)	8월 7일(월) ~ 8월 10(목)	8월 11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14~16 페이지 참조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건본주택 접수 불가)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30064호 (2023.07.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3~17층 13개동 총 1,07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1세대 / 일반공급 1세대)
- 주차대수 : 1,738대 (아파트 1,461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77대)
- 입주시기 : **최초 입주기간 2023년 6월 30일 ~ 8월 31일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일(23.10.10)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930030	01	084.8163A	84A	84.8163	22.6286	107.4449	49.0497	156.4946	35.9652	1	-	1
		02	084.9482C	84C	84.9482	22.7181	107.6663	49.1260	156.7923	36.0393	1	1	-
	합계										2	1	1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분양면적(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면적변동에 따른 추후 정산금액은 없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balcony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수	공급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분양가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084.8163A	84A	103	1502	255,463,000	303,537,000	-	559,000,000	55,900,000	503,100,000
084.9482C	84C	112	603	253,087,000	300,713,000	-	553,800,000	55,380,000	498,420,000

- 상기 공급대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balcony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242-0209-71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대금 전액이 동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함.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변경, 추가, 취소 불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 금 (90%)
		계 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84C	21,000,000	2,100,000	18,900,000

- 본 아파트는 계약 취소된 주택을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에 대해 변경, 추가,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01-0276-1016-41	화성산업(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추가선택 품목 시공 내역 및 금액 (변경, 추가, 취소 불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동호수	구분	제조사	품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 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103동 1502호	시스템 에어컨 2대 (거실 + 침실1)	LG전자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	4,000,000	400,000	3,600,000
		소 계			4,000,000	400,000	3,600,000
84C	112동 603호	시스템에어컨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	6,800,000	680,000	6,120,000
		내실불박이장	에넥스	PET 마감	2,200,000	220,000	1,980,000
		BI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 22K5L@01EC	1,500,000	150,000	1,350,000
		바닥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400,000	140,000	1,260,000
		식기세척기	SK매직	DWA-81U5B	1,000,000	100,000	900,000
		소 계			12,900,000	1,290,000	11,610,000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계약 취소된 공동주택을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이미 시공된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변경, 추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선택시 주택공급 계약자체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와 연동되는 제품임.
- 바닥재 시공 금액에는 기본 시공되는 강마루 비용이 차감된 금액임.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농협은행	301-0276-1007-31	화성산업(주)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후 입금 요망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이하	~9,113,233원	~10,670,878원	~11,256,689원	~12,182,295원	~13,107,900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Ⅳ**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7.31(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2023.8.1(화)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8.04(금)</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8.11(금) (10:00~16:00)</li> <li>•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li> </ul>
일반공급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奎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8.04 (금) ~ 2023.08.13 (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8.04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자격검증을 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격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계약체결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1개월이내 발급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복무기간(10년이상)을 명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개월이내 발급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위임장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23.7.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②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로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표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2023.2.28)]에 따름.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을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VI 기타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7.31.)을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 후 재공급하는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유리난간형식의 프리미엄 창호가 적용되어 이삿짐운반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E/V를 통해 이사를 해야함.
- 본 사업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에 해당되며, 항공기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 지하층 층고 : [지하1층 : 3.8M, 지하2층 : 3.8M]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2.3m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주차면 유효 높이 : 2.1m 이상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104동 1개소)
  - 경로당 (109동 1개소)
  - 보육시설 (104동 1개소)
  - 주민공동시설 (108동, 110동) :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6타석), 작은도서관(독서실), 맘&키즈카페
- 부대복리시설 등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현장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덕성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3학교군내 분산 배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VII

### 입주관련 안내

- 잔금납부 기일은 **2023.10.10** 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주절차 및 세부 안내는 분양사무실(053-353-892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신암4동뉴타운주거복지건축</td> <td>인증번호</td> <td>18-주-에-1-0148</td> </tr> <tr> <td>공공연도</td> <td>2021년 09월 30일</td> <td>발급처</td> <td>최수경</td> </tr> <tr> <td>주 소</td> <td>대구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층 수</td> <td>지하 2층 지상 15-17층(13개동)</td> <td>유효기간</td> <td>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면적</td> <td>119,015.4380㎡</td> <td>유효기간</td> <td>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 <td>공동주택</td> <td>인증등급</td> <td>1등급</td> </tr> <tr> <td>실제자</td> <td>(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요구값</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h>배출량</th> </tr> <tr> <td>0</td> <td>100</td> <td>82.2</td> <td>1</td> <td>0</td> <td>30.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에너지효율 등급</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연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단방</td> <td>34.6</td> <td>64.4</td> <td>50.2</td> <td>13.4</td> </tr> <tr> <td>연립</td> <td>30.7</td> <td>30.5</td> <td>26.4</td> <td>7.2</td> </tr> <tr> <td>층립</td> <td>16.9</td> <td>16.9</td> <td>46.6</td> <td>7.9</td> </tr> <tr> <td>합계</td> <td>3.7</td> <td>3.7</td> <td>10.1</td> <td>1.7</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차등, 가열, 환송, 분할, 중공과일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면적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3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신암4동뉴타운주거복지건축	인증번호	18-주-에-1-0148	공공연도	2021년 09월 30일	발급처	최수경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15-17층(13개동)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119,015.438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1등급	실제자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값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0	100	82.2	1	0	30.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연방	0.0	0.0	0.0	0.0	단방	34.6	64.4	50.2	13.4	연립	30.7	30.5	26.4	7.2	층립	16.9	16.9	46.6	7.9	합계	3.7	3.7	10.1	1.7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 성능등급서</b></p>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b></p> <p>1. 공동주택명 :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          2. 신청자 :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조합          3. 대서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          4. 성능등급</p> <p>가. 소양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별주</th> <th>세부 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생활환경</td> <td>생활환경</td> <td>★★★★</td> </tr> <tr> <td>주거환경</td> <td>주거환경</td> <td>★★★★</td> </tr> <tr> <td>에너지절약</td> <td>에너지절약</td> <td>★★★★</td> </tr> <tr> <td>지속가능성</td> <td>지속가능성</td> <td>★★★★</td> </tr> <tr> <td>지주관리</td> <td>지주관리</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별주</th> <th>세부 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안전성</td> <td>안전성</td> <td>★★★★</td> </tr> <tr> <td>내구성</td> <td>내구성</td> <td>★★★★</td> </tr> <tr> <td>내구성</td> <td>내구성</td> <td>★★★★</td> </tr> <tr> <td>내구성</td> <td>내구성</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별주</th> <th>세부 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생활환경</td> <td>생활환경</td> <td>★★★★</td> </tr> <tr> <td>주거환경</td> <td>주거환경</td> <td>★★★★</td> </tr> <tr> <td>에너지절약</td> <td>에너지절약</td> <td>★★★★</td> </tr> <tr> <td>지속가능성</td> <td>지속가능성</td> <td>★★★★</td> </tr> <tr> <td>지주관리</td> <td>지주관리</td> <td>★★★★</td> </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별주</th> <th>세부 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생활환경</td> <td>생활환경</td> <td>★★★★</td> </tr> <tr> <td>주거환경</td> <td>주거환경</td> <td>★★★★</td> </tr> <tr> <td>에너지절약</td> <td>에너지절약</td> <td>★★★★</td> </tr> <tr> <td>지속가능성</td> <td>지속가능성</td> <td>★★★★</td> </tr> <tr> <td>지주관리</td> <td>지주관리</td> <td>★★★★</td> </tr> </table> <p>마. 화재 - 소양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별주</th> <th>세부 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생활환경</td> <td>생활환경</td> <td>★★★★</td> </tr> <tr> <td>주거환경</td> <td>주거환경</td> <td>★★★★</td> </tr> <tr> <td>에너지절약</td> <td>에너지절약</td> <td>★★★★</td> </tr> <tr> <td>지속가능성</td> <td>지속가능성</td> <td>★★★★</td> </tr> <tr> <td>지주관리</td> <td>지주관리</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4월 09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안전성	안전성	★★★★	내구성	내구성	★★★★	내구성	내구성	★★★★	내구성	내구성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p style="text-align: center;"><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 style="text-align: center;"><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건축물명</td> <td>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td> <td>【인증 개요】</td> <td>인증번호</td> <td>제2018-1539호</td> </tr> <tr> <td>건축주</td> <td>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조합</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d></td> </tr> <tr> <td>인증(예정)일</td> <td>-</td> <td>유효기간</td> <td>2018.04.09. - 사용승인일</td> <td></td> </tr> </table> <p>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p> <p>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17층 / 1089세대</p> <p>면적 : 178,847.79㎡</p> <p>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p> <p>실제자 :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인증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인증등급</td> <td>일반등급(공동주택)</td> </tr> <tr> <td>인증기준</td> <td>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인증기준</td> <td>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td> </tr> <tr> <td>유효기간</td> <td>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분야</th> <th>평가 결과</th> </tr> <tr> <td>토지이용 및 교통</td> <td>56%</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 <td>63%</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60%</td> </tr> <tr> <td>물순환관리</td> <td>48%</td> </tr> <tr> <td>유지관리</td> <td>59%</td> </tr> <tr> <td>생활환경</td> <td>31%</td> </tr> <tr> <td>실내환경</td> <td>6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04월 09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건축물명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18-1539호	건축주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예정)일	-	유효기간	2018.04.09. - 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유효기간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분야	평가 결과	토지이용 및 교통	56%	에너지 및 환경오염	63%	재료 및 자원	60%	물순환관리	48%	유지관리	59%	생활환경	31%	실내환경	60%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신암4동뉴타운주거복지건축	인증번호	18-주-에-1-0148																																																																																																																																																																																																							
공공연도	2021년 09월 30일	발급처	최수경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15-17층(13개동)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119,015.438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1등급																																																																																																																																																																																																							
실제자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값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0	100	82.2	1	0	30.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연방	0.0	0.0	0.0	0.0																																																																																																																																																																																																						
단방	34.6	64.4	50.2	13.4																																																																																																																																																																																																						
연립	30.7	30.5	26.4	7.2																																																																																																																																																																																																						
층립	16.9	16.9	46.6	7.9																																																																																																																																																																																																						
합계	3.7	3.7	10.1	1.7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안전성	안전성	★★★★																																																																																																																																																																																																								
내구성	내구성	★★★★																																																																																																																																																																																																								
내구성	내구성	★★★★																																																																																																																																																																																																								
내구성	내구성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환경	생활환경	★★★★																																																																																																																																																																																																								
주거환경	주거환경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주관리	지주관리	★★★★																																																																																																																																																																																																								
건축물명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18-1539호																																																																																																																																																																																																						
건축주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예정)일	-	유효기간	2018.04.09. - 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유효기간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분야	평가 결과																																																																																																																																																																																																									
토지이용 및 교통	56%																																																																																																																																																																																																									
에너지 및 환경오염	63%																																																																																																																																																																																																									
재료 및 자원	60%																																																																																																																																																																																																									
물순환관리	48%																																																																																																																																																																																																									
유지관리	59%																																																																																																																																																																																																									
생활환경	31%																																																																																																																																																																																																									
실내환경	6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화에프이원	우성설계감리주식회사
감리금액	2,923,297,300원	686,407,400원	494,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3길 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법인등록번호	170171-0019112	170111-0001131

■ 분양문의 : 053-353-8922